

## 촉법소년 옮겨 된 정의인가?

202110022 송치원

필자는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참교육'을 즐겨보는 편이다. 참교육은 교내 체벌이 금지된 지금, 도덕적이지 않은 학생, 소위 양아치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체벌할 수 있는 특수 교육 기관을 창단하여 전국 곳곳의 학교를 감사하는 웹툰이다. 이 웹툰에서 촉법소년을 주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날이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웹툰 내용이 기억에 남아 촉법소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대학 글쓰기 수업을 기회로 삼아 이야기해보고 싶다. 촉법소년 제도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의 미성년자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처음엔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청소년 범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나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듣기만해도 끔찍한 강력 범죄들은 날이 갈 수록 증가해, 이 촉법소년 제도의 유폐에 관한 토론이 장이 실제 고등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할 만큼 활발하다. 따라서 앞으로 쓰여질 글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유폐에 관해 스스로 토론해보고자 한다.

과거와 비교해 현재는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과학 기술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은 증가되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살인, 강간과 같은 청소년 흉악 범죄의 비율은 지난 2006년과 비교해 2016년에는 전체 청소년 범죄 비율 중 2.7%에서 4.4%로 증가되는 기형적인 그래프를 보여준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는 철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닌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부추기는 제도 밖에 안된다. 개인적으로 촉법 소년 제도는 법의 대상 청소년들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에 무지할 때 유지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기사 등 촉법소년과 관련된 기사가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촉법소년 제도에 관해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제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시대는 끊임 없이 변화해 나가는데 국가의 근간이자 정의라고 칭할 수 있는 법은 과거에 재정되었으나 문제 상황이 계속 발발하고 있음에도 현재에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의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이상적인 칭할 수 있다고 본다. 저 먼 옛날 고조선 시대의 8조법을 현재 시대에까지 적용할 수 없지 않은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촉법소년 제도에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노릇이다. 만 12세에서 만 13세만 되어도 어떤 문제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할 순 없을지라도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의 대상자 나이도 만 12세 미만 정도로 조정해야한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사람의 입장은 이렇하다. 촉법소년 대상자들은 이제 인생

의 첫 걸음을 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이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 방식이 잘 먹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했을 때 한창 사회에 대해 배우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저지른 철 없는 행동이 가해 학생에게 평생 낙인 되어 나중에 사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성인과 똑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형벌의 주된 목적은 교화에 있는데 잘못된 아이들에게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중형을 부여하면 누가 그 아이들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소년 교도소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초기에 잡는 것이다 더 중요하다.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미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로 과거보다 여러 범죄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학교 내부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힘을 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강력 범죄의 비율은 과거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결국 청소년 본인 본질의 문제다.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만 12세에서 만 13세 언저리의 아이들이 항상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일반화하고 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어느 누구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교육 시스템이 발달 되어도 결국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 본인이 아닌 가정 환경으로부터 나온다. 형사적인 무거운 처벌은 철 없는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여럿 존재하는데 나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한 다기보다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적용되던 법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겐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일반 청소년들에겐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2021년 11월 23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통계", 주제 33 "소년범죄" 2021년 11월 23일 접속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367387&ord=1](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367387&ord=1)